

# 예 산 총 칙

2016년도 추경 2 회

제 1 조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314,141,914	9,424,257
일반회계	294,924,568	8,847,737
특별회계	19,217,346	576,520
기타특별회계	19,217,346	576,520
상수도특별회계	8,280,849	248,425
주택사업특별회계	6,543	196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880,768	26,423
기차마을사업특별회계	4,146,622	124,399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438,202	13,146
장기미집행시설특별회계	200,167	6,005
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	4,364,740	130,942
자활기금특별회계	899,455	26,984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 3 조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82억원으로 한다.

제 4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3,431,528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다음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 (1) 기준인건비에 포함되는 경비
- (2)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 (3) 재해대책 및 복구비
- (4) 동일부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 경비